

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용(2024년 하반기)

연번	일자	질문 내용	답변 내용	처리결과
1	2024.10.04.	업무 관련으로 책 구매 예정이고, 온라인 서점 통해 구매 예정인데 구매 후 적립된 포인트를 추후 업무 관련 구매 시 사용해도 괜찮을지 문의	<p>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11조(법인카드 포인트의 사용 및 관리) ②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포인트는 병원의 지출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위 조항에 따라 개인카드 적립이 아닌 아이디 내에 현금화 불가능한 포인트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	완료
2	2024.10.30.	워크숍 중 기념품 증정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- 기념품 증정행사 상품 목록을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으며, 각각의 상품은 가격이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, 총 예산을 100만원 정도로 할 예정 관련 계획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대한 문의	<p>청탁금지법 제8조(상품등의 수수 금지)제3항제7조 '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'에 해당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,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,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.</p>	완료
3	2024.12.10.	업무 관련 없는 광고촬영시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	<p>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하고 있습니다.</p> <p>하지만 해당 광고 촬영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초래하거나,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 사항이며, 해당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</p>	완료
4	2024.12.17.	업무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15만원 이내로 선물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문의	<p>청탁금지법 제8조(상품등의 수수 금지) 제3항 제2조에 따라 '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. 다만, 선물 중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.'</p> <p>위의 가액범위 이내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(통상 15만원, 명절 기간 중 30만원)</p> <p>또한 참고로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) 제2항에 따라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"이란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(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)를 말한다.</p>	완료